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대상자

대상자		주소	발급기간	공고사유
성명	생년월일			
이*준	2007.03.20.	서대문구 통일로 ***	2024. 4. 1. ~ 2025. 3. 31.	등기우편 반송, 연락불가

2. 공고기간 : 2024. 4. 3. ~ 2024. 4. 18.

3. 신청장소 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

4. 발급기간 : 2024. 4. 1. ~ 2025. 3. 31.(12개월)

5. 발급준비물

- 가.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
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이·통장의 확인을 받거나,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 혈족 또는 형제·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가능
- 나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매(3.5cm × 4.5cm)
-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제출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,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문의 : ☎02-330-8592, 담당자 : 장민주)

2024. 4. 3.

흥은제2동장 (인)

